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12. 6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23일, 전승학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4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12월 6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강희향 의원

가. 제안이유

국외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대한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규정(안 제3조)
- 자매결연 등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)
- 자매결연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유준상)

○ 본 조례안은

국외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

써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마포구 국외자매도시는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,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이며 우호교류 체결지로는 노르웨이 아스케르시가 있음.

기존 마포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나 이번에 조례로 자매결연 등 선정기준, 체결 및 파기 시 의회동의,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외교적 결례를 방지하고 상호 방문하여 문화 및 우호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아울러 글로벌 마포 발전을 위해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